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찌기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117. 1992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의 중퇴율(제적, 중퇴, 휴학자 등 포함)은 중학교에서 0.8%, 고등학교에서 2.3%로 남학생(중학교 : 1.0%, 고등학교 : 3.1%)의 경우보다 낮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제10조(마)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가족계획

118.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사업은 국가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범정부차원에서 1960년대부터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결과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960년 3.0%에서 1992년 0.96%로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90년 1.6%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선진국형의 저출산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가족계획사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119. 정부는 1989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피임보급 물량의 축소와 더불어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요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피임 실천을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가족계획사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20. 가족계획 실적에 나타난 피임방법을 살펴 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피임률이 계속 증가한 반면 여성의 피임률이 줄어들고 있다(표 16).

(표 16)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단위 : %)

구 분	1982	1985	1988	1991
영 구 피 임	28.1 (19.1)	40.5 (57.5)	48.2 (62.5)	47.3 (59.6)
-여성(난관)	23.0 (40.2)	31.6 (44.9)	37.2 (48.2)	35.3 (44.5)
-남성(정관)	5.1 (8.9)	8.9 (12.6)	11.0 (14.3)	12.0 (15.1)
일 시 피 임	29.6 (50.9)	29.9 (42.5)	28.9 (37.5)	32.1 (40.4)
-여 성	22.4 (38.8)	22.7 (32.2)	18.7 (33.5)	21.9 (27.6)
-남 성	7.2 (8.6)	7.2 (10.3)	10.2 (13.2)	10.2 (12.0)
총 계	57.7(100.0)	70.4(100.0)	77.1(100.0)	79.4(100.0)
-여 성	45.4 (78.7)	64.3 (91.3)	55.9 (72.5)	57.2 (72.1)
-남 성	12.3 (21.3)	16.1 (8.7)	21.2 (27.5)	22.2 (27.9)

(자료) : 보건사회부, 가족보건사업 참고자료,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2

121. 1992년도 가족계획 사업실적중 남녀 불임시술의 비율이 55 : 45로서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한 후 처음으로 남성 불임시술이 여성 불임시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불임시술의 부작용이 남성 불임시술의 그것보다 많음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하겠으며, 피임에 대한 국민의식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122. 가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모자보건사업, 아동보육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제13조 (가)호에서 언급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제12조 제2항에, 아동보육사업은 제11조 제2항 (다)호에 언급되어 있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123.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2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기본정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및 기타 남녀고용평등관련 노동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4. 근로기준법은 총칙 제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1987년 제정되고 1989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모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조 (나)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125.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유엔 산하 16개 전문기구중 유일하게 가입하지 못하였던 국제노동기구(IL0)의 회원국이 되었다. 정부는 IL0가 입을 계기로 대내적으로는 勞·使·政 3자로 구성되는 "국제노동협의회"

에서 선정하는 협약을 단계적으로 비준해 나가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더욱 매진하고, 대외적으로는 ILO 주관의 각종 회의·세미나 및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노동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여성경제활동인구

126. 1992년 현재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7,770천명으로 1985년에 비해 1,795천명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5년 41.9%에서 1992년 47.3%로 5.4% 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표 17). 1992년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연소연령층(15-19세)과 혼인 및 육아연령층(25-34세)에서 낮은 참가율을 보인 반면 35-39세(57.8%), 40-44세 연령층(60.5%)과 45-49세 연령층(61.0%)에서 높은 참가율을 보이는 M자형을 나타내고 있다(표 18).

(표 17)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남	여	남	여
1980	9,020	5,435	73.6	41.6
1985	9,617	5,975	72.3	41.9
1992	11,615	7,770	75.3	47.3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표 18)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단위 : 천명, %)

구분	1985		1992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총수	5,975	41.9	7,770	47.3
15 - 19세	399	21.1	346	17.4
20 - 24세	1,029	55.1	1,344	65.4
25 - 29세	721	35.9	822	44.3
30 - 34세	646	43.6	933	47.9
35 - 39세	685	52.9	942	57.8
40 - 44세	659	58.2	822	60.5
45 - 49세	648	59.2	690	61.0
50 - 54세	489	52.4	694	60.8
55 - 59세	353	47.2	527	54.1
60세 이상	347	19.2	651	27.7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여성취업자 현황

127. 취업자 전반의 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인 가운데 1985-1992년 사이 여성 취업자 수 역시 1,781천명이 증가하였다. 총 취업자 가운데 여성 구성비도 1985년에 39.0%, 1992년에는 40.2%로 다소 증가하였다.

산업별 여성취업자

128. 1992년 현재 여성취업을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4,304천명(전체 여성 취업자의 56.6%), 광업 및 제조업에 1,921천명(25.2%), 그리고 농림·어업등 1차산업에 1,384천명(18.2%)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산업별 분포는 1985년에 비해 1차산업 취업자가 231천명 줄어든 반면, 2차산업 취업자는 563천명, 3차산업 취업자는 1,449천명이 늘어난 것이다(표 19).

(표 19)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산업		1980	1985	1992
1차산업	계	4,658 (34.0)	3,722 (24.9)	3,025 (16.0)
	남	2,619 (31.0)	2,107 (23.1)	1,641 (14.5)
	여	2,039 (38.9)	1,615 (27.7)	1,384 (18.2)
2차산업	계	3,095 (22.6)	3,654 (24.5)	4,828 (25.5)
	남	1,918 (22.7)	2,296 (25.2)	2,907 (25.7)
	여	1,178 (22.5)	1,358 (23.3)	1,921 (25.2)
3차산업	계	5,952 (43.4)	7,559 (50.6)	11,068 (58.5)
	남	3,926 (46.4)	4,704 (51.7)	6,764 (59.8)
	여	2,026 (38.6)	2,855 (47.8)	4,304 (56.6)
총 계	계	13,706 (100.0)	14,935 (100.0)	18,921(100.0)
	남	8,462 (100.0)	9,107 (100.0)	11,312(100.0)
	여	5,243 (100.0)	5,828 (100.0)	7,609(100.0)

(주) : ()안은 취업자 구성비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직업별 여성취업자

129. 1992년 현재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의 분포를 보면, 생산직 여성이 1,724천명(여성취업자의 22.7%)으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직 1,381천명(18.1%), 서비스직 1,345천명(17.7%), 판매직 1,330천명(17.5%), 사무직 1,099천명(14.4%),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731천명(9.6%)의 순이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 및 사무직의 경우 1985년의 5.4%, 10.2%에 비해 각각 9.6%, 14.4%로 증가하였다(표 20).

(표 20) 직업별 여성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직 종	1980	1985	1992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185 (3.5)	317 (5.4)	731 (9.6)
사무관련직	415 (7.9)	596 (10.2)	1,099 (14.4)
판매직	867 (16.5)	1,068 (18.3)	1,330 (17.5)
서비스직	630 (12.0)	992 (17.0)	1,345 (17.7)
농림·어업	2,039 (38.9)	1,608 (27.6)	1,381 (18.1)
생산·운수·단순 노무직	1,106 (21.1)	1,248 (21.4)	1,724 (22.7)
계	5,243(100.0)	5,828(100.0)	7,609(100.0)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파트타임 여성근로자

130. 우리나라 전체 여성근로자중 시간제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1992년 현재 16.2% (1,087천명)이다(표 21). 이들 시간제 여성 인력의 대부분은 서비스 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여성 시간제 직종으로는 파출부, 간병인, 요리사, 도배사, 판매원 등을 들 수 있다.

131. 정부는 1987년 이후 저소득층 근로여성이나 일용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단체를 통하여 가사서비스직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 여성근로자중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비율
(단위 : 천명, %)

연도	구분	총수	건설업	도·소 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운수 창고업
1986	전체 시간제· 일용직 (비율)	5,610	63	1,480	1,187	680	158	56
		1,009	9	149	95	83	7	1
		18.0	14.3	10.1	8.0	12.2	4.4	2.8
1992	전체 시간제· 일용직 (비율)	6,702	124	1,266	1,340	940	250	74
		1,087	15	164	143	175	22	4
		16.2	12.1	13.0	10.7	18.6	8.8	5.4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보고』, 1987, 1993

-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 받을 권리
-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 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고용분야의 남녀평등조치

132.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종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규제할 수 없었던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성차별행위도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33.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4~5년에 걸쳐 노·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1990년이후 본격적으로 법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1990년 사립대, 병원, 호텔업종에서의 여성차별적인 취업규칙을 심사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1991년에는 고졸행원 채용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는 은행 인사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의 폐지를 지시하였다. 1992년에는 선도부문으로 설정한 은행, 제2금융기관, 30대그룹 대표기업 등 169개 업체의 제규정을 일제 심사하여 1993년 상반기중 이들 169개 업체 모두의 성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심사하여 1997년까지는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성차별적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134.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훈련실시기관의 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시하는 것이고 사업내 직업훈련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체에서 반드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의무제도이며, 인정직업훈련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훈련이다.

135. 총 훈련기관중 여성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1985년은 272개 기관중 136개 기관(50.0%)이었으나, 1992년에는 411개 기관중 294개 기관(71.5%)으로 여성을 훈련시키고 있는 기관의 수와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훈련기관별 여성훈련자 수는 다음과 같다(표 22).

(표 22) 연도별, 성별, 훈련기관주체별 훈련생

(단위 : 명, %)

구 분		1980	1985	1992
계	계	104,480(100.0)	55,385(100.0)	178,864(100.0)
	여자	25,594(24.5)	9,057(16.3)	29,791(16.7)
공 공	계	31,131(100.0)	22,583(100.0)	26,131(100.0)
	여자	1,246(4.0)	924(10.2)	2,415(9.2)
사업내	계	66,123(100.0)	23,876(100.0)	122,457(100.0)
	여자	21,258(32.1)	4,388(48.4)	19,827(16.2)
인 정	계	7,136(100.0)	8,926(100.0)	30,276(100.0)
	여자	3,090(43.3)	3,745(41.4)	7,549(24.9)

(자료) : 노동부, 「여성과 취업」, 해당년도

136. 직업훈련 활동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991년에 여성의 직업능력 배양과 직업훈련 기회확대를 위하여 건립된 여성전용 국립직업훈련원(안성여자직업훈련원)이다. 이곳에서는 정밀측정, 전자, 기계설비, 의상디자인, 귀금속공예, 사무자동화 등 6개 부문에서 총 450명의 여성이 훈련을 받고 있다.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37. 1989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법제화하였다.

가사노동

138.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여러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가사노동의 잠재적인 소득의 가치는 각종 법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사노동자는 각종 사고의 경우 배상금 지급시 유급노동자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다.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은 부부간 생활비 공동부담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가사노동가치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0년과 1994년에 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대폭 인정한 결과이다. 현재 정부는 가사노동가치를 세법과 보험관련 제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근로자 유급휴가

139.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 :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2년이상 근속자에게는 매년 1일씩 가산)
- 월차유급휴가 : 매월 1일 (연 12일)을 유급으로 부여
- 생리유급휴가(여자) : 매월 1일 (연 12일)을 유급으로 부여
- 산전·후휴가(여자) : 60일을 유급으로 부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40. 정부는 국민들이 노령·질병 등에 대비하여 소득 및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13조 (가)호에 언급되어 있다.

141.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한 법적 장치로서 1997년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다.

심신장애여성 보호·지원사업

142. 장애여성의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여 교육, 고용 및 건강서비스와 사회보장에의 평등한 기회와 사회 및 문화적 생활 모든영역에 참가를 보장

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과 199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및 장애인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 장애인복지관, 서비스센터를 부설하여 재가 장애인에게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3. 또한 1991년부터 시·도에 등록된 장애인에게 철도 및 지하철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노령여성 보호·지원사업

144. 우리나라는 그동안 계속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년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144천명으로 전체인구의 5.0%이며 이 중 여성은 1,336천명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2000년에는 3,167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145. 이에 따라 정부는 경로효친사상의 양양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이들에 대한 건전한 삶과 생의 의욕을 고취하여 건전한 사회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과 1991년 12월 31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경제력 상실의 위기에 놓여 있는 노인들을 위해 1981년부터 노인취업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을 설치·운영해오고 있으며 1986년부터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능력에 맞는 간단한 작업을 통하여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1991년부터는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대하여 노령수당이

월 15천원씩 지급되고 있다.

146. 그 밖에 경로우대를 위해 1980년부터 철도요금 50% 할인 실시 및 지하철, 공원, 고궁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87년부터 노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부모 봉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영기업체 및 민간기업체까지 부모봉양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83년부터 노인건강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147.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제4조 『여성특별보호규정』에서 언급하였다.

근로여성 보호

148. 정부는 저소득 미혼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1985-1992년간 8,604세대를 건립하여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주고, 미혼여성들이 주위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거주함으로써 노출될 수 있는 도덕상, 보건상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149.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산전, 산후의 여자는 이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과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3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6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유급으로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150.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정부의 지원하에 보육시설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3년 9월말 현재 5,239개 보육시설에서 149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표 23).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가구당 월소득 70만원미만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 시설별 탁아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1991년	1992년	1993. 9
국공립	503개소	720개소	804개소
민 간	1,217	1,808	2,238
직 장	19	28	29
가 정	1,931	1,957	2,168
계	3,670개소 (89,441명)	4,513개소 (123,297명)	5,239개소 (149,102명)

(주) : 보육시설이라 함은 정부에 신고 또는 인가된 보육시설을 의미
(자료) : 보사부, 미발간자료, 1993

151. 1991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세제지원을 확대하였고, 1992년 5월에는 『건축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했으며 시설신축비, 운영 및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훈련기관 운영 등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해왔다. 1997년까지는 모든 보육대상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재정으로는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민간은 일반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등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15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신중의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3. 보건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모자보건사업과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제도가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제12조 제2항에 언급되어 있으며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제도에 관해서는 제13조 (가)호에 언급되어 있다. 이같은 정책에 힘입어 최근 몇년간의 건강관련 지표는 여성건강이 상당히 증진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성건강 관련지표는 다음과 같다.

평균수명

154.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90년 현재 71.3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평균수명은 75.4세로 남성의 평균수명 67.4세보다 8.0세가 더 길다.

모성 및 영아사망율

155. 모성사망율은 출생아 10,000명당 모의 사망비율로, 1980년 4.2명, 1985년 3.4명, 1992년에는 3.0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영아사망율은 출생아 1,000명당 12개월 미만 아동의 사망비율로, 1980년 36.8명, 1985년 13.3명, 1992년 12.8명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표 24).

(표 24) 영아 및 모성 사망율

(단위 : %)

연도	영아사망율 (천명당)	모성사망율 (만명당)
1980	36.8	4.2
1985	13.3	3.4
1992	12.8	3.0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3

출산율

156.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 전개결과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960년 3.0%에서 1992년 0.96%로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90년 1.6%로 감소하여, 인구조절정책은 성공적이었다.

예방접종

157. 예방접종은 면역확대를 위한 노력으로서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그 효과가 큰 사업이다. 정부는 신생아와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표25). 현재 비씨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혼합백신(DPT)·풍진 혼합백신(MMR), 그리고 B형 간염백신과 일본 뇌염백신, 장티푸스백신, 신증후 출혈열 백신 등을 접종하고 있으며 높은 접종율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후 90일 이내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조사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완전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표 25) 주요전염병 예방접종 실적

(단위 : 명)

구 분	1980	1985	1992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1,465,512	1,936,512	2,135,453
디프테리아·파상풍	831,133	730,665	603,524
소아마비	1,685,012	2,193,789	2,395,078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	462,841	592,982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해당년도

AIDS 환자 현황 및 대책

158. 1992년 현재 AIDS 환자는 10명이며, HIV Positive 환자는 245명으로 이중 여성 AIDS 환자는 3명, HIV Positive 여성환자는 27명이다(표 26).

(표 26) AIDS 및 HIV Positive 감염자 수

(단위 : 명)

연도	AIDS			HIV Positive		
	계	남	여	계	남	여
1985	-	-	-	1	1	-
1988	3	2	1	22	17	5
1989	1	-	1	37	35	2
1990	2	2	-	54	50	4
1991	1	-	1	42	38	4
1992	2	2	-	76	72	4
계	10	7	3	245	218	27

(자료) : 보건사회부, 미발간 자료, 1993.

159. 정부는 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AIDS의 국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 11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제정하여 AIDS환자 발생예방과 감염자에 대한 보호 관리에 힘쓰고 있다.

160. 동 법이 규정한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DS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국민에게 홍보할 것과 국민은 이 법에 의한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감염자 발견시 보고의무, AIDS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감염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한 검진, 혈액 제공자의 혈액검사, 감염된 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161. 정부는 AIDS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과 건전한 생활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AIDS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자 발견 및 전파방지를 위해 특수접대부, 외항선원 등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AIDS 정기검진 및 모든 헌혈액에 대한 검사 실시, 감염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소비여성 보호·관리사업

162. 정부는 마약류 남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대국민 홍보, 계몽교육과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유통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및 재활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163. 이에 따라 마약류 확산예방을 위해 포스터, 표어, 팸플릿등 홍보자료를 1992년에 5종 314천부, 1993년에 2종 200부를 제작·배포한 바 있고 홍보비디오를 제작, 전국 850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64. 또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및 재활훈련을 위해 전국 22개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통해 무료로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까지 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지방에 200병상의 치료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자보건사업

165.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므로써, 남녀 모두에게 보건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기회와 형평을 보장하고 있다.

166. 1986년 5월 전면개정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보건을 위해 기초건강진단 실시,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실시 등의 서비스 제공과 농어촌지역의 임신부 및 유아의 건강관리와 시설분만 유도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 실적은 (표 27)과 같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소에 등록된 저소득층 임신부·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므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빈혈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임신부에 대하여는 빈혈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기본예방접종(DPT, DT, MMR, Polio)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예방을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무료) 및 사후관리(특수조제분유 공급)를 실시하고 있다.

- 모자보건관리에 있어서 출생증명서 등 일련의 산과적 기록은 매우 중요하므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 의료인이 산전관리 내용과 분만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표 27) 모자보건사업 실적

(단위: 명)

연도	임산부 등록	영유아 등록	분만보조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기본예방접종 (무료분)
1980	318,227	651,775	-	-	-	-
1985	283,700	527,765	17,685	-	-	17,418,000
1992	82,935	350,708	3,632	35,011	36,976	5,780,000

(자료) : 보사부, 미발간자료, 1993.

임신중절

167. 형법상 임신중절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다. 따라서 임신중절 환자와 환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이 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할 때

168.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홍보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를 통하여 학생, 사업장 근로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윤리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확한 피임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원치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등 인공임신중절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 13 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169. 정부는 예기치않은 사고에 부딪힌 국민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녀를 막론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170. 국민연금법은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해 가입자의 각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 소득보장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6년 12월 31일 공포되었고 1989년 3월 31일 개정되었다.

171.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10인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172.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적용된다. 1993년 11월 현재 5,127천명이(사업장가입자 5,077천명, 지역가

입자 40천명, 임의계속가입자 10천명)이 가입되어 있고 이 제도의 관리운영은 보건사회부 감독하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하고 있다.

173.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령연금은 20년이상 가입하여 60세에 달한때부터 사망시까지 지급하고 장해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발생시 지급하며 유족연금은 1년이상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174. 앞으로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992 - 1996) 기간중에 농어민에게 확대 실시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모든 국민이 연금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보험

175. 1963년 12월 16일 제정된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의료보험을 1989년 7월 1일부터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의료보호를 받는 저소득국민 2,370천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여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176. 의료보험제도는 가입자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농어촌,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누어진다.

177. 보험급여의 종류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법정급여로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의 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요양비·분만급여·분만비가 있고 부가급여는 장제비·분만수당·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서 보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78.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표준보수월액의 3~8% 범위내에서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공·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표준보수월액의 3.8%로 하고 본인과 정부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는 본인 50%·재단 30%·정부 20%를 각각 부담한다. 농어민등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관리운영비 전액과 보험급여비의 50%이다.

의료보호

179. 의료보호제도는 1977년에 제정된 의료보호법에 의해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이다. 의료보호의 대상자는 생활수준에 따라 1종보호대상자(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그 가족등) 2종보호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보호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현재 2,366천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180.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지정의료기관에 의한 의료서비스와 출산급여가 제공된다.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무료로 제공받는 것이 원칙이나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181. 의료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생활보호사업

182.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해 오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988년도에 전국민의 5.4%인 2,310천명이었으나 1993년 1월 현재 전국민의 4.5%인 2,001천명으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을 성별로 살펴보면 1993년 현재 여성가구주가 전체의 64.8%로서 남성가구주(35.2%)보다 훨씬 많다.

183. 이들에게는 주·부식비등 생계비가 매월 지급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등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에 의하여 병이 발생하였을때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모자복지사업

184. 정부는 저소득 여성세대주 가정을 돕기 위하여 1989. 4. 1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1991년 4월 22일 중앙과 각 시·도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모자가정의 복지에 관한 사업 전반을 심의하게 하므로써 모자가정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85.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한 모자가정의 실태조사 결과 1989년도에는 모자가정이 75,889세대 244,710명이었으나 1992년말 현재는 55,772세대 170,56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의 경우 1990년도에는 전체 모자가정의 54.6%인 35,922세대가 보호를 받았으나 1992년도에는 전체모자가정의 72.6%인 40,514세대가 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8).

(표 28) 모 자 가 정 보 호 실 적

(단위 : 세대/명/%)

년도		1989	1990	1991	1992
구분	세대수	75,889	65,755	58,922	55,772
	세대원	239,272	207,370	184,186	170,561
보호세대수		35,790	35,922	38,888	40,514
(보호율)		47.2	54.6	66	72.6

(자료) : 보사부, 미발간자료, 1993

186. 정부는 전체 모자가정중 공적부조대상인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를 모자보호시설에 3~5년 동안 수용 보호하여 기본생계를 보조하는 한편 자립하는 퇴소세대에게는 15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세대로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모자가정 및 모자보호시설 퇴소후 자립기반이 미약한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모자자립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2년말 현재 39개소의 시설에 2,697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정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자녀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수준 미만의 모자가정은 1992년부터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해택이 주어지고 1993년부터는 자녀학비를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급받게 된다.

(나)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관한 권리

은행대출

187. 은행의 신용거래 및 대부는 상대자의 경제적 신용상태, 자산수준 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용거래나 대부에 있어 차별을 두는 제도, 업무처리지침이나 내부규정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고,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이다. 공식 통계자료가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는 없다.

188. 여성이 은행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남편의 서명이 필요하지는 않다. 단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그 조건은 남녀 공히 재산세나 소득세를 낸 과세증명서가 있거나 거래실적에 따라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189.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편모가 생활안정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등이 필요할때 이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190. 이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으나 여성은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문화시설 이용 등 문화생활에 있어서 법적, 실제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14 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1. 농촌여성을 위한 정책은 제14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농촌여성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촌여성인구

192. 1970년대 이후 도시산업화 정책으로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85~1992년 사이에 농촌 남성인구는 4,246천명에서 2,763천명으로 1,483천명이 감소하고 농촌 여성인구는 4,275천명에서 2,944천명으로 1,331천명이 감소하였다.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특히 청·장년층 남성인구의 탈농촌현상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여성화를 초래하여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70년 41.7%에서 1985년 43.4%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는 50.8%에 이르게 되었다.

농가의 노동투하시간

193. 농가의 노동투하시간은 1985년의 2,016시간에서, 1992년에는 1,412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노동투하시간의 남녀간 비율은 1985

년에는 57.2%:42.8% 이었으나 1992년에는 51.9%:48.1%로 나타나 농사일에
서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194.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 맞추어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 기간부터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농기계훈련의 질적인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매해 5천여명에게 농기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95. 정부는 1981년부터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선진과학영농의 기수가 될 영농후계자를 선정하여 농촌정착에 필요한 농업경영기술 향상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1991) 기간부터 여성영농후계자 확대를 포함시켰다.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보건시설

196. 정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가족계획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1980년대부터 『농어촌등보건의료료위헌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과의사와 보건진료원을 배치함은 물론 매년 정부투자를 확대하여 건물 신·증축 및 의료장비 보강을 계속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97. 공중보건과의사와 공중보건장학의사는 1991년 현재 4천여명이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원을 배치함으로써 1992년 현재 전국 2,039개의 보건진료소에 2,039명의 보건진료원이 활동하고 있다.

198.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의 자격을 가진자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예방활동과 경미한 의료행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성으로 보건의료업무 뿐만 아니라 부녀회 조직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199. 1988년이후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도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는 15개 군지역은

보건소를 병원화하여 진료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진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라) 기술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해독 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 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농촌여성 문맹율

200. 농촌여성 문맹율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으나 전체적인 실태는 제10조(마)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201. 농촌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여건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농촌여성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다양화된 역할을 잘 수행하고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 이 교육은 중앙단위의 농촌여성 지도자교육, 도단위의 농촌여성 특별교육, 시·군단위의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겨울농민교육(시·군단위)으로 나뉘어지며 의·식·주, 가정관리, 노동위생 등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표 29).

203. 농촌여성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활과학실습실을 설치하여 교육 및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활과학실습실은 요리실습 뿐만 아니라 의생활실습, 생활예절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각종 실습기구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농촌여성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표 29)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1992년 실적 및 1993계획
(단위 : 명/백만원)

구 분	인 원	예 산	1993 계획
도 단위 특별교육	1,379	62	1,000
시·군 단위 과제교육	107,041	497	99,000
계	108,420	559	100,000

(자료) : 농업진흥청, 미발간자료, 1993

(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바)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부녀지도사업

204. 정부는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훈령 제141호로 공포된 「부녀지도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선 시·군·구 및 마을단위의 부녀회 조직인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부녀회원들에 대한 가족계획사업, 교양지도사업, 저축 및 소득증대사업, 농촌생활개선사업 등에 관한 부녀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5. 부녀지도사업 운영방법은 보건사회부에 중앙부녀지도협의회(1개), 각 시·도에 시·도 부녀지도협의회(15개), 각 시·군·구에 시·군·구 부녀지도협의회(276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협의회의 구성위원은 사업 관련 분야의 정부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사업분야의 관계자로 하고 있다. 각 협의회별로 년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조사항 조정, 부녀대상사업의 공동추진업무에 관한 건의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다.

206. 전국의 마을단위 부녀회는 약 88,000개가 있으며, 각 부녀회 단위로

가족계획 등 가족보건문제, 건전가정조성·환경보호 등 계몽활동, 농촌의 의·식·주 및 보건위생 등 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지도, 농가의 경제적·사회적 생활향상을 위한 저축 및 소득증대를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도 선정하여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기관과 항상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과정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회관

207. 여성의 자질향상, 잠재능력 개발, 저소득여성의 경제적기반 조성과 일반여성의 복지증진,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여성회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8. 여성회관은 1987~1990년도에는 전국 36개시설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 6월말 현재 5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건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209. 여성회관 사업내용은 주로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과 취미·교양교육, 상담사업, 탁아사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등이다.

- 기능훈련 과목으로는 양재, 미용, 수예, 급식조리, 전산기기, 한복, 컴퓨터, 가구공예 등으로 연간 48천여명이 이수하고 있으며

- 취미·교양교육 과목은 주로 꽃꽂이, 서예, 사진, 음악교실, 스포츠교실, 가정원에 등으로 연간 40천명이 이수하고 있다.

- 상담사업은 주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 가정불화 및 가출여성, 요보호여성 등의 장애 진로문제에 관한 조언, 충고, 조치 등의 내용으로 연평균 46천건을 상담하고 있으며

- 탁아사업, 편의시설 제공사업 등은 수강자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

210.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은 농촌여성의 농업외의 소득원 및 부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발굴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을 늘릴 뿐만 아니라 농촌여성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211. 이 사업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중앙시범사업으로 1년에 5개소씩 800만원을 보조하여 육성해왔고 각 지방별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량을 늘릴 계획이다(표 30).

(표 30)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 현황

구 분	1990 - 1992 실적			1993 계획		
	사업량	참여인원	예산지원	사업량	예산지원	비고
중앙시범지역	개소 15	명 221	백만원 120	개소 6	백만원 48	개소당 8백만원 지원
지방자체육성지역	144	3,112	574.5	71	588	
계	159	3,333	694.5	77	636	

(자료) : 농업진흥청, 미발간자료, 1993

212. 일감맞기사업으로는 지역농산물의 가공포장 판매, 특산물 제작 등이 주를 이루는데 농촌여성들의 정성이 담긴 생산품에 대한 도시민의 호응이 높아 1인당 연간 1백 ~ 2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13. 농촌의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가주부의 가사노동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은 1983년부터 농어촌발전기금의 용자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해 왔다(표 31).

(표 31)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연 도	사업량	용자금액	호당 지원액
1983 - 1989	56 천호	126 억원	20 - 50 만원
1990 - 1991	23	276	120
1992	9.5	147	140 - 210
1993(계획)	7.5	157.5	210
계	96	706.5	

(자료) : 농업진흥청, 미발간자료, 1993

214. 주로 재래식 부엌개량을 통해 농촌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줄여 1일 취사시간이 20~40%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변소의 개량과 목욕실의 설치로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215.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앞의 평등과 성차별 금지를 선언한 양성평등의 원칙조

항으로서 1948년 제헌헌법때부터 보장해 온 내용이다.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상의 이 기본원칙의 효력에 의하여 입법권자와 법률적용기관은 평등원칙 준수 의무를 가지며,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법률·법령·관습 등은 무효이다.

216. 헌법 제 11조 제 1항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은 모든 생활영역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므로써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가 되고 있다. 사생활과 정신생활 영역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제 16 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다) 혼인증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7. 헌법 제 36조 제 1항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므로써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의 존엄, 혼인의 자유, 양성의 평등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218. 1958년 개정된 가족법은 혼인, 이혼, 상속 등 여러 관련조항에서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규정이 많았으나 1990년 1월 대폭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가족법은 남녀평등의 이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 내용은 제 2조 (나)호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약혼, 결혼 및 이혼

219. 약혼에 관해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으며,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고,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0. 결혼에 관해서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해야 결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결혼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21.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222. 이혼에 관해서는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므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 법제상 존재하는 개념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자녀에 대한 친권

223. 이혼후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하여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여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224.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종전의 부권중심에서 부부평등으로 되었으며,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혼인외의

자가 인정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친권을 행사하는父 또는 母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도록 되어 있다.

후견인

225. 법정후견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부계·모계혈족간의 차이와 부부간의 차이를 없애고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하였다. 따라서 친족의 범위는 모계혈족과 처족인척이 확대되고, 남편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은 4촌으로 좁혀졌다.

1. (사)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226. 이 조항중 가족姓을 선택할 부부로서의 동일한 권리는 국내법과 상치되어 현재 비준이 유보되어 있다.

1.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재산권

227. 1990년과 1994년 개정된 『상속세법』은 상속 및 증여시 배우자 공제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미취업배우자 특히 주부에게 상당한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228.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은 재산권에 있어서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약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혼인증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증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각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다.

Introduction

1. The Republic of Korea, being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ereby submits its third report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sa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Third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Republic of Korea has introduced far-reaching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and their participation in every aspect of national life. It has endeavored to ensure that men and women enjoy their equal rights to the full. Major policies in this regard include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for women's affairs, revising and/or introducing laws and, where necessary, modifying the legal system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breaking down the prejudices against women deeply ingrained in Korean culture.

3.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Ministry of Political Affairs (M) for women in 1988 and empowered it with full authority to coordinate al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ctivities aimed at elevating the status of women and to prepare proposals. Within this framework, all government ministries concerned are required to consult with the Ministry regarding their policies, programs and legislative actions that affect women's rights and status. At the sub-national level, administrative units charged with family and women's affairs were established in six major cities, nine provinces, and 154 other localities and lady workers were appointed to take charge of these units. Furthermore, since coming into power in February 1988, the present Administration has made a special point of expanding women's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highest-level national policy-making machinery by, for example, appointing three women ministers such as the minister for the first time. Within the Presidential Office, along with the Secretary for Women's Affairs is also a woman and a lady, respectively, as the same office is headed by a woman. In addition, the number of lady officials has

Introduction

1. The Republic of Korea, being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erewith submits its third report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said Convention.
2. Since the submission of its second report in 198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introduced far-reaching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with the central objective of realizing an egalitarian society where women are respected and can participate in every aspects of national life on an equal basis with men and utilize their capabilities to the full. Major policies in this connection include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for women's affairs, revising and/or introducing laws and, where necessary, modifying the legal system itself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breaking down the prejudices against women deeply ingrained in Korean culture.
3.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Ministry of Political Affairs (II) (for women) in 1988 and empowered it with full authority to coordinate al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ctivities aimed at advancing the status of women and to propose measures. Within this framework, all government ministries concerned are required to consult with the Ministry regarding their policies, programmes and legislative actions that affect women's rights and status. At the sub-national level, administrative units charged with family and women's affairs were established in six major cities, nine provinces, and 184 other localities and many women were appointed to take charge of those units. Furthermore, since coming into power in February 1993, the present Administration has made a special point of expanding women's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high-level national policy-making machinery by, for example, appointing three women ministers and an vice minister for the first time. Within the Presidential Office (Chung-Wa-Dai), the Secretary for Women's Affairs is also a woman and a deputy spokesperson for the same Office is now in the process of being recruited from among women.

4. To provide appropriate institutional support for addressing women's issues, various laws containing elements of gender-discrimination have been revised and leg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maternity rights were strengthened. Specifically, the Government revised the Family Registration Act and Domestic Litigation Act to establish egalitarian family relations according to the revised Family Law of 1990;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as revised in 1990 and 1994 to raise the level of tax deductions and to better protect the right of wives to inherit property upon the demise of their spouses; the Special Infant and Child Care Act was introduced in 1991 as part of a comprehensive child care policy and a large number of day care facilities were newly established under government guidance and financial support; and in 1989 and 1991,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Civil Servants Employment Regulations were revised to eliminate gender-discrimination from the recruitment and appointment of civil servants and, as a result, the number of female public employees increased greatly.

5. The Government published an administrative guideline in 1991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f 1989 and significant inroads have been made in all employment sectors as a result. Progress in the public sector was particularly noteworthy.

6. Sexual violence has been an issue of priority concern in the country in recent years and the Ministry of Political Affairs (II) and other concerned Ministries have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aimed at addressing the issue. Particularly noteworthy among them is the legislation, in January 1994, of the Law for Punishing Sexual Offenders and Protecting Victims of Sexual Assaults, which defines sexual violence as a crime deserving extra heavy punishment and provides a broad range of protection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is law is already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7. Since 1990, the Government took active steps to develop training programmes to sensitize government officials to gender issues and to breakdown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s about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The Government has also begu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school curricula at all levels to eliminate gender biases from text books, and to instill, instead, the values of gender equality. Teachers at all levels are in the process of undergoing special training aimed at changing their

thinking and attitudes, which is necessary if they are to effectively use the revised curricula and provide truly gender-equal career guidance.

8. In order that the above and other measures for women be carried out in a systematic and coordinated manner as part of the country's overall development efforts, they have been made a part of the Government's Five-Year Plan for the New Economy (1993-1997) which replaced the Seven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1992-1996), as they were part of the Sixth Plan (1987-1991). Women's development issues and concerns have been given priority atten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employment, culture, social action, social welfar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respect to all these fields, the Five-Year Plan for the New Economy provides concrete policies and programmes on women for the relevant government parties to implement.

9. Looking ahead to the 21st century, the Government intends to fully comply with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and to honor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t shall continue to endeavour to achieve gender equality within the country and shall seek to contribute actively in international efforts to that end as a new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PART I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hall mean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made on the basis of sex which has the effect or purpose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by women,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9.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s revised on 1 April 1989, in Article 2, Item 2 (Definition), defines "discrimination" as follows:

- 1) In the present Act, "discrimination" refers to unfair measures by employers in the process of personnel recruitment and in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conditions on the bases of gender, pregnancy, marriage and/or familial status.
- 2) Maternity benefits for working women are not regarded as discrimination in this law.
- 3) Preferential treatment of specific workers by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self-governing bodies or employers for the purpose of redressing existing discriminatory conditions is not viewed as discrimination in this law.

Article 2

States Parties condem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ll its forms, agree to pursue by all appropriate means and without delay a policy of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o this end, undertake:

(a) To embody the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in their national constitutions or other appropriate legislation if not yet incorporated therein and to ensure, through law and other appropriate means,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this principle:

Status of Women in the Constitution

10. All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The Korean constitution sets dow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Article 11, Item 1 when it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This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all sectors has been stipulated in explicit and concrete terms in the Constitution's various articles.

11. With reference to the economic sphere, Article 32, Item 4 provides that "Special protection shall be accorded to working women and they shall not be subjected to unjust discrimination in terms of employm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12. In the area of family life, Article 36, Item 1 stipulates that "Marriage and family life shall be entered into and sustain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and the State shall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achieve that goal".

13. In the political sphere, Articles 24 and 25 state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s prescribed by law", and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s prescribed by law." They, thus, guarantee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with respect to public life.

14. Furthermore, by stipulating in Article 34, Item 3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welfare and rights of women", the Constitution obligates the State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women's status.

(b) To adopt appropriat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including sanctions where appropriate, prohibiting al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modify or abolish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which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 Legal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s Status

15. Since the 1980's, a broad range of laws containing gender biases have been revised to introduce the necessary institutional adjustment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The following laws have undergone revision :

The Labour Standards Act

16. Based on Article 32, Item 4 of the Constitution mentioned above, the Labour Standards Act was revised to ensure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Article 5) and to protect women's maternity rights (Chapter 5).

17. Previously, the Labour Standards Act was applied to a limited range of work places. Since its revision on 29 March 1989, i) it is now applicable to all business/industrial establishment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ii) penalties for non-compliance have been stiffened; iii) the employer is required to grant menstrual leaves even without his or her employees requesting it; and iv) to secure over-time work from female employees, employers now need their consent whereas previously they only needed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Labour.

18. In order to encourage its speedy implementation, the revised Labour Standards Act stipulates a fine of up to five million won (US\$6,250) for violation of the equal treatment for equal work clause and up to 5 year imprisonment or up to 30 million won (US\$37,500) fine for violation of the maternity rights protection clause.

The Family Law (Domestic Relations and Inheritance Clauses of the Civil Code)

19. The Family Law which constitutes part of the Civil Code, in its 1958 version, contained many traditional element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especially with regards to marriage, divorce and inheritance. The Law was revised in 1990 and many of the discriminatory elements have been removed. It accords women a status almost equal to men's and introduced an egalitarian family system with the husband and wife at the center as equal partners. This represents a marked departure from the country's traditional concept of family relationships.

20. A few of the most notable changes include women's right to head a family, something previously unthinkable in the country's heavily Confucian cultural context, and the removal of male privileges in inheritance. The revised Law also accords women the right to claim their share of the family property although it may be in their spouses' name and, thus, officially recognizes the wife's contribution to the accumulation of family assets. Further more, it grants a divorced woman the right of guardianship over her children. These and other details of the revised Family Law are as shown in Table 1.

21. In support of the revised Family Law and its full and speedy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took steps to revise the Tax Law, the Domestic Litigation Act, etc.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revised in 1990 and again in 1994, for instance, upwardly adjusted the level of tax exemption for the wife's inheritance from her spouse's estate. This is in clear legal recognition of the right of the housewife to her share of domestic property even when she has not engaged in any gainful outside employment and has, thus, not made any direct contribution to the family property.

22. The Property Tax Assessment Regulations, used to check the source of funds used to acquire property, previously contained sexually unequal provisions in terms of the source of taxable funds and the maximum ceiling on tax deductions with the June 1991 revision of the Regulations, those inequalities have been completely removed.

<Table 1> Major Features of the Revised Family Law

Category	The Old Family Law	The Revised Family Law
(Domestic Relationship) 1. Domicile of the spouses 2. Child adoption 3. Property claim at divorce	Normally the husband's address By the husband's decision	Determine by consultation between the spouses Determine jointly by H/W New provision: Recognizes wife's housework as contribution to the family assets
(Guardianship) 1. Exercise of guardianship rights 2. Guardianship over a child out of wedlock 3. Child care responsibility and visiting rights after divorce 4. Extended kinship	When the parents disagree the father has the prior rights Jointly by the putative father and the mother on the child's registration recor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parents. If no agreement, the father decides. Visiting rights of the father and the mother without guardianship rights not recognized. Blood relations up to 8 times removed on the father's side. Blood relations up to 4 times removed on the mother's side. Blood relations up to 8 times removed on the husband's father's side. Blood relations up to 4 times removed on the husband's mother's side. Parents of the wife. Spouse.	The parents to exercise joint guardianship. If they disagree, the family court decides The natural mother may be the third party in the joint guardianship by agreement among all concerned. If no agreement, the family court decides. By agreement between the parents. If no agreement, the family court decides. Visiting rights of the father and the mother without guardianship rights recognized. Blood relations up to 4 times removed on the father/mother's sides. Blood relations up to 4 times removed on the spouse's father/mother's sides.
(Head of Family)	Inheritance of family headship (unrenounceable) Prerogatives of head of family: . The right to select the family domicile . The right to enter a person in the family register.	Succession of family headship (renounceable) Protection of female head of family: previously recognized only when no male is present in the family.
(Inheritance System) 1. Share portions	Upon the demise of family head without a will: Eldest son - 1.5	Upon the demise of family head without a will: Children - 1